

군산시 공고 제2018-1906호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군 산 시 장

1. 개정이유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역자율방재단 조직에 부단장 직제 추가 (안 제4조제1항)
 - (현행) 부단장 직제 없음 → (개정) 부단장 직제 추가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 단장 선출방식 변경 (안 제4조제2항)
 - (현행) 회의 과반수 참석자 중 과반수 찬성 → (개정) 회의 참석자 중 호선
 - (현행) 위촉 → (개정) 임명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사문 규정 정비(안 제8조, 제10조)
 - 자연재난 → 재난(사회재난까지 포함),
 - 전염병 → 감염병

- 전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명 개정사항 반영
-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080무료 전화 → 긴급통신수단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 동법→ 같은 법, 불명→불분명, 태만히→게을리, 기타→그 밖의, 사전에→미리, 유관기관→관계기관

3. 의견제출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10월 31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전화 : 063-454-3863, FAX : 063-454-3829)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자연재난계(전화 063-454-386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를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1인, 간사 1인”을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고”를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고”로, “의거”를 “따라”로, “위촉”을 “임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간사”를 “부단장, 간사”로 한다.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제5조제6항(중전의 제5항) 중 “간사”를 “부단장, 간사”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불명”을 “불분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태만히”를 “게을리”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대표”를 “읍·면·동 대표”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자연재난”을 “재난”으로, “사전에”를 “미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자연재난”을 “재난”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유관기관”을 “관계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공중보건관리 등”을 “공중보건관리”로 한다.

제10조제6항 중 “080무료전화”를 “긴급통신수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2호 중 “자연재난업무”를 “재난업무”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위촉장양식(제4조관련)

임명장

주소 :

성명 :

귀하를 **군산시 지역자율방재 단장**으로
임명합니다.

년 월 일

군산시장

[별지 제2호 서식]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 <개인>

(제4조관련)

등록번호 : _____

성 명	○○○(성별)	연 령		혈 액 형	
주 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자 격 증 또는 기능			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 난 현장경험	※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희 망 활동내용	※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상기 본인은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 ○ ○(인)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2-1호 서식]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 <단체>

(제4조관련)

등록번호 : _____

단 체 명			대 표 자	○ ○ ○ (휴대전화)
주 소			대표전화	
담 당 자	○ ○ ○ (휴대전화)	부서명		
인 원	남 ○○명	여 ○○명	총인원	○○명
장 비	장비명(규격) ○○ 대	장비명(규격) ○○ 대	장비명(규격) ○○ 대	장비명(규격) ○○ 대
지원가능	남 ○○ 명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여 ○○ 명			
전문분야	※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			
활동희망분야	※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p>[특이사항]</p> <p>([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p>				

상기 본 단체는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 ○ ○(인)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활 동 확 인 서 (예시)

(제10조관련)

성 명	(인)	등록번호	※ 서식2의 등록번호
활동내용	사 유	※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방 법	※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시 간	○○○○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시간)	
	장 소	※ ○○면(군)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내 용	※ 활동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확인자	직위	○○읍(면동)대표	성명 (인)

본인은 군산시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써 상기와 같이 활동 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군산시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 확인자는 읍면동의 대표나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 등

[별지 제4호 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제10조관련)

등록 번호	성 명	활 동 상 황		비고
		횟수	시간	
1				
2				
3				
⋮				

※ 등록번호

- 개인의 경우는 [별지제2 서식]의 등록번호를 기재
- 단체의 경우는 [별지제2-1 서식]의 등록번호와 [별지 제2-2 서식]의 연
번을 붙여서 기재 [(예) 10-1]

※ 횟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

※ 자료가 계속 변경되므로 한글이나 EXCEL등으로 관리

※ [별지 제 3-1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

※ 활동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방재단 사무실에 제출

[별지 제5호 서식]

‘○○년도 연중 활동계획서

(제10조관련)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월 별	주 요 내 용	비 고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 세부사항은 별도붙임 가능

※ 자치단체의 방재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별지 제6호 서식]

출 입 증

(제12조관련)

출 입 증

사진
3×4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원

5.5cm

지역자율방재단원증

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 홍 길 동

생년월일 : 123456-1234567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자에게 재난발생
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007. . .

군 산 시 장

7.7cm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 ----- -----.</p>
<p>제4조(조직) ①방재단은 <u>단장 1인, 간사 1인</u> 및 단원으로 구성 된다.</p> <p>②<u>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u></p> <p>③<u>간사</u>는 단체 또는 개인 중 단장이 지명한다.</p> <p>④ ~ ⑧ (생략)</p>	<p>제4조(조직) ① ----- <u>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u> -----.</p> <p>② --- <u>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고</u>----- <u>따라</u> ----- ----- <u>임명</u>-----.</p> <p>③ <u>부단장, 간사</u>----- -.</p> <p>④ ~ ⑧ (현행과 같음)</p>
<p>제5조 (임원 및 임무 등) ①·② (생략)</p> <p><신 설></p> <p>③·④ (생략)</p> <p>⑤ <u>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임할 수 있다.</u></p>	<p>제5조 (임원 및 임무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 시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u></p> <p>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p> <p>⑥ --- <u>부단장, 간사</u>----- -----.</p>
<p>제6조 (해임) ① 단원 등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p> <p>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u>불명한 경우</u></p> <p>2.·3. (생략)</p>	<p>제6조 (해임) ① ----- ----- -----.</p> <p>1. ----- <u>불분명</u>-----</p> <p>2.·3. (현행과 같음)</p>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② (생략)

제7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생략)

② 협의회는 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③ ~ ⑥ (생략)

제8조(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4. (생략)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7. (생략)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9.·10. (생략)

③·④ (생략)

제10조 (운영 등) ① ~ ⑤ (생략)

4. ----- 게을리 -----

5. 그 밖의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읍·면·동 대표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임무) ① ----- 재난 -----
----- 미리 -----

② -----

1. (현행과 같음)

2. 재난 -----

3.·4. (현행과 같음)

5. ----- 관계기관 -----

6.·7. (현행과 같음)

8. 감염병 ----- 공중보건관리

9.·10.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10조 (운영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방재단원이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080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⑦·⑧ (생략)

⑨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략)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 7. (생략)

⑥ -----
----- 긴급통신
수단을 -----.

⑦·⑧ (현행과 같음)

⑨ -----

-----.

1. (현행과 같음)

2. -----
----- 재난업무 -----

3. ~ 7. (현행과 같음)

군산시 공고 제2018-1910호.

「군산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따라 교육적 관심을 교육 사각지대 청소년들로 확대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관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나. 이에 조례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학교 부적응 청소년에 지속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 신설로 조례의 주요 개념 정의 삽입(안 제1장)

나. 조례의 장 신설 및 기존 순서 재배치로 규정 명확화(안 제1장~제4장)

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지원 근거 규정 신설(안 제3장)

3.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0월 25일까지 군산시장(참조 : 인재양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sgghh468@korea.kr

2)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인재양성과

3) 팩스 : 063-454-257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인재양성과 인재양성계(전화 : 063-454-258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군산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산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비를 재원으로 하여 군산시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및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여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를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기존 정규 학교교육 이외의 다양한 경험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습자를 위하여 특별한 교수법과 프로그램, 활동, 여건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란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라북도교육감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각급 학교 및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한 다양한 교육 사업 보조를 통하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각급 학교 및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역할과 책임의 수행에 필요한 정상적인 교육 여건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2장 각급 학교 보조

제5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교육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 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 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 사업
5.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6조(교육경비보조) ① 시장은 교육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군산시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해당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제7조(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결정 등) ① 각급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목적과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 계획서
4. 지급받고자 하는 보조금과 그 산출기초
5.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사업완료 예정일
6. 보조사업의 효과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장으로부터 보조사업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지급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제8조(목적 외 사용의 금지) ① 각급 학교의 장은 시장이 지급한 보조금을 지급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지급 목적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의 보조사업에 있어서 거짓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9조(보조사업의 변경) ① 학교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결정 후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제10조(보고 및 검사) ① 교육경비를 보조받은 학교장 등은 사업이 종료되면 보조사업 시행 실적과 교육경비 집행내역을 시장 및 군산교육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학교의 시설이용) 교육장 및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경비 지원으로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제3장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등

제12조(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시장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장은 시장이 지급한 보조금을 지급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법령 및 조례의 관계규정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때
 4. 다른 기관·단체의 동일사업과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
- ③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장은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등)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원경비가 사업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정보공개)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된 내용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단체명, 단체 전화번호
2. 대표자명

제4장 위원회

제16조(교육지원심의위원회)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에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군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2. 군산시 본청 국장 2명
 3. 학교 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로 시장이 추천하는 자
 4.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추천한 교육지원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 1명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관계기관·단체 소속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1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경비 보조 지원대상 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 순위 결정
4. 그 밖에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관련 시장이 부여하는 사항

제20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군산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1조(목적) 이 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비를 재원으로 하여 군산시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u>학교의</u>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u>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u><신 설></u></p>	<p style="text-align: center;"><u>제1장 총칙</u></p> <p>제1조(목적) -- 조례는 시비----- ----- ----- ----- <u>학교 및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u> ---- <u>보조하여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u>-----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u>”란 「<u>초·중등교육법</u>」 제2조 및 「<u>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u>」에 따라 <u>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u>각급 학교</u>”라 한다)를 말한다.</u></p> <p>2. “<u>대안교육</u>”이란 기존 정규 학교교육 이외의 다양한 경험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습자를 위하여 특별한 교수법과 프로그램, 활동, 여건 등</p>

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란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라북도교육감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신 설>

제3조(기본이념) 각급 학교 및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한 다양한 교육 사업 보조를 통하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신 설>

제4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급 학교 및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역할과 책임의 수행에 필요한 정상적인 교육 여건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신 설>

제2장 각급 학교 보조

<신 설>

제3장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등

<신 설>

제12조(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시장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

<신 설>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 대안

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장은 시장이 지급한 보조금을 지급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 1. 법령 및 조례의 관계규정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2. 사업의 목적 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때
- 4. 다른 기관·단체의 동일사업과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

③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장은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4조(지도·감독 등) 시장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원경비가 사업목적에 합당하게 사용

<신 설>

<신 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군산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교육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 6. (생 략)
- 7. 그 밖에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 (생 략)

제4조 · 제5조 (생 략)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생 략)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

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정보공개)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된 내용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1. 단체명, 단체 전화번호
- 2. 대표자명

제4장 위원회

제5조(보조사업의 범위)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

-----.

- 1. ~ 6. (현행과 같음)
- 7. ----- 시장-----

제6조 (현행 제3조와 같음)

제16조 · 제17조 (현행 제4조 및 제5조와 같음)

제1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생략)

제7조 ~ 제9조 (생략)

제10조(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결정 등) ①각급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6. (생략)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정하는 사항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장으로부터 보조사업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지급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2. (생략)

제11조 ~ 제14조 (생략)

제15조 (생략)

----- 부위원장이 그 -----.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 ~ 제21조 (현행 제7조부터 제9조까지와 같음)

제7조(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결정 등)

① -----

-----.

1. ~ 6. (현행과 같음)

7.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② -----
----- 경우에는 다음 -----
-----.

1.·2. (현행과 같음)

제8조 ~ 제11조 (현행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와 같음)

제22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군산시 공고 제2018-1929호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시행 2018. 6. 30., 대통령령 제28521호)의 조례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6조(용역 결과 공개) 제1항 수정

① 용역발주 부서장은 용역 결과물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용역발주 부서장은 용역 결과물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여야 한다.

나. 제16조(용역 결과 공개) 제1항 제1호, 제2호 신설

1) 학술용역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서 정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공개

2) 기술용역, 일반용역 :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

3. 의견제출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11월 5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기획예산과(전화 : 063-454-2317, FAX : 063-452-8157, 전자우편 : leeyg461@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 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예산계(전화 063-454-23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참고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용역발주 부서장은 용역 결과물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여야 한다.

1. 학술용역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서 정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공개
2. 기술용역, 일반용역 :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

제16조제2항(중전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용역 결과 공개) <신 설></p> <p>① 용역발주 부서장은 용역 결과물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16조(용역 결과 공개) ① 용역발주 부서장은 용역 결과물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여야 한다.</p> <p>1. 학술용역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서 정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공개</p> <p>2. 기술용역, 일반용역 :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군산시 공고 제2018-1934호

『군산시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와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형식적인 시민참여를 탈피하고 시민중심의 시정운영 구현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과 실행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민참여의 목적, 기본이념, 정의, 시장의 책무 등(안 제1조~제5조)
- 나. 회의공개, 위원회 참여, 토론 청구, 시민 의견조사 실시(안 제6조 ~제9조)
- 다.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안 제10조~제14조)

3. 조 례 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기획계(☎ 063-454-23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입법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방법 : 직접방문(서면), 팩스, 전자우편

다. 의견 제출장소

- 주 소 : (54078) 군산시 시청로 17(군산시청) 5층 기획예산과
- 전 화 : 063-454-2304
- 팩 스 : 063-452-8157
- 전자우편 : echo3800@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군산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연락이 가능한 휴대폰, 자택, 사무실 등)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시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공정성, 민주성,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군산시민의 행정 참여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시민과 시가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시민참여는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 시민은 누구나 시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민이 협력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이란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시민참여”란 시의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 및 평가 단계까지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시민과 시가 협동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시민참여 기회를 제공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이행사항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시민은 누구나 시정에 대한 참여와 의견제시의 권

리를 가지며, 민주 시민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 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공개의 원칙)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회의, 위원회 회의 등은 법령 및 조례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과정 및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참여) ①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로 하여 일반시민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노인, 청소년, 장애인, 여성, 다문화 가정 등 사회약자의 참여를 확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각종 위원회 개최는 연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정책토론 청구) ① 시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타당성에 대한 공개 토론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책토론을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시민의 수는 300명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책토론 청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2. 수사나 소송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4. 감사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5. 해당 사무처리 종료일부터 2년이 경과된 사항

6. 청구일부터 1년 이내에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토론 등을 실시하였던 사항

④ 시장은 토론 청구에 대하여 시민참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청구에 응하여야 하며, 토론 개최가 곤란한 때에는 별도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토론 결과의 반영 여부를 1개월 이내에 토론 청구인 대표자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시민 의견조사 실시) ① 시장은 시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민 의견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시민참여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시민참여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군산시 시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야별 전문가, 시의원, 시민대표,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의원,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시민참여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 및 수행한다.

1. 시정발전에 관한 정책건의 및 행정개선 사항

2. 시민참여 실행을 위한 시민참여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3. 시민이 청구한 토론 등의 실시여부 및 토론회 실시에 관한 사항
4.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정운영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가 필요한 사항

제12조(위원의 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 또는 시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민참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공고 제2018-1936호

군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 출산장려 정책 추진 동참과 군산시 합계출산율 등 순인구 증가요인 감소 추세 시점에 적극적인 출산장려시책 추진으로 출산율은 물론 인구유입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출산지원금 인상 및 출산축하금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변경

- '군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원조례' → '군산시 출산지원금 등에 관한 조례'

나. 출산장려금 명칭 변경

- '출산장려금' → '출산지원금'

다. 제3조(지원대상) 수정

- '군산시 1년 이상 거주한 부모' → '군산시 1년 이상 거주한 부 또는 모'

라. 제4조(지원내용 및 기준) 제1항 출산장려금 지원금액 인상

- 둘째아 : (현행) 500,000원 → (개정) 700,000원
- 셋째아 : (현행) 1,000,000원 → (개정) 2,700,000원
- 넷째아 : (현행) 3,000,000원 → (개정) 4,700,000원
- 다섯째아 이상 : (현행) 3,000,000원 → (개정) 9,700,000원

마. 제4조(지원내용 및 기준) 제4항 재혼가정 자녀, 동일세대 등재된 경우에만 출생순위 인정

바. 제4조(지원내용 및 기준) 제5항 출산축하금 지원

- 2019. 1. 1 이후 출생아부터 300천원 상당의 상품권 지원

3. 의견제출

군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10월 25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가족청소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가족청소년과(전화 : 454-3253, FAX : 063-452-9477)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가족청소년과 가족다문화지원계

전화 063-454-325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군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붙임참고

군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산시 출산지원금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의거 출산장려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녀의 출산·양육에 경제적 도움을 주는 등 저출산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과 출산축하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생아”라 함은 출생 후 1년 미만의 “영아”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출산장려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과 자녀양육을 위해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3. “출산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이란 자녀출산을 축하하기 위해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4. “가정”이란 신생아가 부 또는 모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지원금 및 축하금 지원대상은 군산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출생 신고한 가정으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 지난 날로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②시에 출생 신고한 가정 중 신생아가 부모가 아닌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와 같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보호자가 지원대상으로 시에 1년 이상 주민등

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제4조(지원내용과 기준) ①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첫째아는 30만원, 둘째아는 70만원, 셋째아는 270만원, 넷째아는 470만원, 다섯째아 이상은 970만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지원금의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급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 이력이 있거나 전출 시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1. 첫째아 출산가정 : 30만원 일시금 지급
2. 둘째아 출산가정 : 70만원 일시금 지급
3. 셋째아 출산가정 : 태어난 해 90만원 지급 후, 1년경과시마다 90만원씩 2년간 지급
4. 넷째아 출산가정 : 태어난 해 170만원 지급 후, 1년경과시마다 100만원씩 3년간 지급
5. 다섯째아 이상 출산가정 : 태어난 해 370만원 지급 후, 1년경과시마다 150만원씩 4년간 지급

③쌍생아의 경우에는 출생순위에 따라 각각 지급 한다.

④재혼가정(법적부부)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 또는 모 기준의 출생 자녀를 인정하되,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출생순위로 인정한다.

⑤축하금은 출생순위와 관계없이 출생아 한명당 예산의 범위에서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지원한다.

⑥출산축하금 지원기준은 2019. 1. 1일부터 출생한 신생아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지원금 및 축하금 지원 신청인(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 제2항의 경우에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

②신청인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방법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관할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2호 서식 출산 지원금 및 출산축하금 신청·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행정 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지원금 및 축하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②지원금의 경우 관할 읍·면·동장은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작성하여 15일 이내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 출산지원금 지급대장에 기재 후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축하금의 경우 관할 읍·면·동장은 신청자가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별지 제3호 서식 출산축하금 지급대장에 기재한 후 축하금을 지급하고, 매월 지원한 축하금 실적에 대해 출산축하금 지급대장과 수불대장을 작성하여 다음 달 3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①시장은 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읍·면·동장은 축하금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 및 축하금을 환수하였을 때에는 지원금 및 축하금 지급대장에 그 환수 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관리) ①읍·면·동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출산처리통합서비스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출산지원금 및 축하금 신청·접수대장(별지 제2호 서식)

3. 출산축하금 지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

4. 출산축하금 수불대장(별지 제4호 서식)

②시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출산지원금 지급대장(별지 제5호 서식)

2. 출산축하금 배부 및 수령대장(별지 제6호 서식)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 1.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에 따른 출산지원금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 출생아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9.1.1.>

[앞면]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처리기간
신청시 별도안내

신청일 : 20 . . . 다문화가정 여부 예 아니오

신청인 (대리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 번호	출산자와의 관계	연락처
	주소			

출산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 주소지)		

※ 신청인과 출산자가 동일한 경우 미기재

가족 사항	세대주와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 출생자 포함해서 기재	동거여부	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본인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자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자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지방자치단체 자체 급부	<input type="checkbox"/> 출산 지원금	<input type="checkbox"/> 첫째 자녀(이름 :) <input type="checkbox"/> 둘째 자녀(이름 :) <input type="checkbox"/> 셋째 자녀(이름 :) <input type="checkbox"/> 넷째 자녀 이상(이름 :)
	<input type="checkbox"/> 출산 축하금	<input type="checkbox"/> 자녀(이름 :)
	<input type="checkbox"/> 셋째아 이상 육아용품비 지원(250천원. 1회)	구입영수증 <input type="checkbox"/> 첨부 <input type="checkbox"/> 미첨부 ※ 미첨부시 추후제출

일 반	<input type="checkbox"/> 가정양육수당	아기 이름	신청 내용	
			<input type="checkbox"/> 양육수당(가정양육)	<input type="checkbox"/> 농어촌양육수당
			<input type="checkbox"/> 양육수당(가정양육)	<input type="checkbox"/> 농어촌양육수당

다자녀(3명 이상)	<input type="checkbox"/>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 고객번호 :)
	<input type="checkbox"/>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급부계좌	성명	출산자와의 관계	대상서비스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결과 통지 방법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위와 같이 출산급부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가족관계등록담당자 확인		복지담당확인	
출생사실 및 가족관계사항	<input type="checkbox"/> 확인 <input type="checkbox"/> 미 확인	<input type="checkbox"/> 20 년 월 일	
부모의 거주기간	부 ()년 ()월	<input type="checkbox"/> 소속 및 직급 :	
	모 ()년 ()월		
다자녀	<input type="checkbox"/> ()째	<input type="checkbox"/> 성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input type="checkbox"/> 20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소속 및 직급 : <input type="checkbox"/> 성명 : (서명 또는 인)		

※ 본 서식의 급부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신청 시 제출 서류(공통)	추가 제출 서류(해당되는 서류만 제출)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자(대리 신청자) 신분증*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1. 대리 신청인은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출산자 신분증 2.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1부(현금지원 해당자에 한함) 3. 육아용품 구입비 영수증(넷째아 이상 육아용품지원비)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증명서류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신청하는 곳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안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내	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산모)의 배우자,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출산자(산모) 친부모 및 시부모)

유의 사항 및 행정정보공용이용 사전 동의

-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제54조제3항4호, 「의료급여법」제35조제4항 등 관련법에 의거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 신청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 소득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건강보험증정보,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장애등급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지역난방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고 개인정보를 상기 기관, 개인정보 위탁 및 제3자제공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공하는 항목은 고유식별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경감서비스처리에 필요한 고객센터 등을 포함하며, 상세 내용은 기관별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식 참조)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전기료, 도시가스요금은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전, 도시가스회사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 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출산급여 제공(변경)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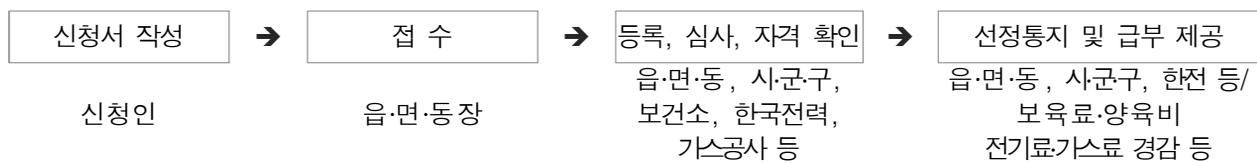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_____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처리 절차



군산시 공고 제 2018-1942호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군 산 시 장

1. 개정이유

-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개정(2014. 12. 30.)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나.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재난현장의 수습·복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 1) [현행]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
- [개정]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목적 표준안 반영(제1조)

다. 재난현장 수습·복구 정의 변경(제2조제3호)

- 1) 긴급구조와 긴급복구 → 긴급구조

라. 긴급구조기관 임무로 긴급복구, 통합대응 단계 삭제

- 1) 제3조제4호, 제18조(재난현장 통합대응), 제21조(재난현장 긴급복구), 제22조(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 삭제

마. 통합지원본부와 대책본부의 역할 분리(제7조제3항제7호)

- 1) 정보발령, 피난권고,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바. 재난유형 수행 부서가 없을 경우 현장대응반장 지정(제9조제2항제2호)

1) 통합지원본부의 장이 판단하여 현장대응반장을

→ 군산시 재난관리 총괄부서의 장(안전총괄과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사. 현장응급의료소의 지원 사항 변경(제16조제1항)

1) 응급처치 및 지정병원 이송 → 이송

2) 활동상황과 재난현장에 동원된 자원봉사 단체의 인력에 대한 상황 → 활동

야.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에 따른 명칭 변경(제20조제1항, 제2항)

1) 「자원봉사센터」를 →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자.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 재난현장 통신망 확보(제23조)

차. 권한 변경

1) 경보를 발령 → 경보 발령을 대책본부장에게 요청(제11조제1항)

2) 통합지원본부장 → 대책본부장(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1항)

3) 긴급구조통제단장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제21조제1항, 제2항)

3. 의견제출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10월 25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전화 : 063-454-3844, FAX : 063-454-3829)

- 전자우편 : yan2000@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계(전화 063-454-384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2.“재난현장 긴급대응”이란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구조 지원, 응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 3.“재난현장 수습·복구”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가 완료되고 통합지원본부장의 통제 하에 사고현장의 수습, 자원지원, 환경정비, 의료지원, 시설복구, 자원봉사단체관리 등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 4.“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군산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 5.“현장대응반장”이란 유형별 사고발생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 별표1의3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군산

시의 관·과·소의 장을 통합지원본부장이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

6.“현장책임관”이란 통합지원본부가 현장 출동하는 시간동안 통합대응을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의 현장대응반이 가동되기 전까지 현장대응반장의 임무를 대행하는 자를 통합지원본부의 장이 임명하고 현장대응반장의 지휘를 받는 재난지역 소속 읍·면·동장을 말한다.

7.“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수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 상황전파 : 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전파하는 단계
2. 현장출동 :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3. 긴급구조 지원 : 긴급구조 단계에서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되어 현장지휘에 통합지원본부가 협력하는 단계
4. 수습·복구 : 재난현장에서 대응·수습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제2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및 현장책임관 지정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상황 발생시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난현

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군산시 통합지원본부(이하“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9조에 따른 현장대응반장 또는 현장책임관이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현장에 출동하게 되면 통합지원본부가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단일 사고로서 사망 3명이상 또는 부상 20명이상의 재난,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
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 홍수, 화산폭발, 적조 등 자연재해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3. 「산림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신고 및 보고된 산불
4.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
5. 국가기반시설, 교육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문화재 등 화재, 붕괴, 폭발
6. 중대한 유류·유해화학물질 유출
7. 신종 감염병 발생 및 법정 감염병 집단발생
8. 저수지, 댐, 방조제등 제방 붕괴 징후발견 및 피해 발생
9. 해양 선박사고 또는 유선·도선의 충돌, 좌초 등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10. 상수원 보호구역의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11.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군산시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재난상황 발생

제5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계획 통보)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법 제16조에 따른 전라북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통합지원본부장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서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지원 협력이 용이하고, 긴급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 편성 및 임무)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부시장이 되며 통합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대책본부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자원지원 요청에 협조
4.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역할분담 및 조정
5. 재난현장 인력·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7. 그 밖에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보급,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사회질서유지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④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에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반, 현장대응반, 자원지원반, 대민지원반 등 실무반을 둘 수 있으며, 구성된 실무반은 별표 1 및 별표 2의 편제와 주요 임무를 수행 한다.

⑤ 통합지원본부장은 제4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시 영 별표1의3의 재난 유형과 사고 규모를 판단하여 실무반장과 현장대응요원을 사전에 지정하고 24시간 가동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⑥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출동에 필요한 차량 사전지정, 현장사무소에 필요한 임시사무실, 책상, 의자, 매뉴얼 등을 그 차량에 미리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연락관 파견)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조 활동시 긴급구조통제단에 통합지원본부의 직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파견자는 긴급구조 상황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즉보해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수습·복구시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원활한 협업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지원본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9조(사고수습 총괄부서의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 지정)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을 신속하게 대처하고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영 별표1의3의 재난유형별 사고발생시 사고대응 중앙 주관부처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다만, 사고대응 중앙 주관부

처가 중복될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의 장이 사고현장의 규모를 판단하여 중앙부처 업무를 수행하는 중복 부서 중에서 사고 비중에 따라 현장대응반장을 임명한다.

2. 영 별표1의3의 재난유형별 사고발생시 사고대응 중앙 주관부처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없을 경우 군산시 재난관리 총괄부서의 장(안전총괄과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판단하여 실정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운영한다.

3. 영 별표1의3의 재난유형별 사고발생 시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통합지원본부의 현장대응반이 가동되기 전에 재난현장의 원활한 통합대응을 위하여 재난 지역 소속 읍·면·동장을 초기대응 현장책임관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현장책임관은 통합지원본부의 현장대응반장의 지휘를 받는다.

제3장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제1절 재난현장 상황전파

제10조(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업무연락관 등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달받은 재난 상황에 대하여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재난지역 주민대피)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및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을 요청하거나 민방위 경보 발령을 대책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2절 재난현장 출동

제12조(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의 대응·수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와 인력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원 동원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대응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한다.

제14조(재난현장의 출동지원) ① 대책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절 긴급구조 지원

제15조(긴급구조 지원) 통합지원본부장은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활동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인력이나 물자지원 요청시 지원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현장응급의료소 지원) ① 긴급구조 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20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응급의료소의 소장(보건소장)은 부상자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현장에 현장응급의료소가 정상가동 될 때까지 통합지원본부 현장대응반에 소속한 의료인력과 자원을 긴급구조 대응 활동에 우선 지원한다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절 재난현장 조치

제17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대책본부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삭제

제19조(재난현장 통제) 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자원봉사활동의 지원)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의 자원지원반에 소속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 하여야 하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동원된 인력에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자원봉사 단체 및 인력에 대하여 안전교육 실시
2. 사고현장 작업방법 교육 및 작업현장 분산배치
3. 작업복 및 작업도구 지원 등.

-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에서 부족한 자원 지원요청이 있을시 법 제39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1조 삭제

제22조 삭제

제4장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

제23조(재난현장 통신망 확보) ① 대책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해 재난 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 법 제37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현장지휘통신 긴급복구 등을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에 기술인력 파견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수습·복구체계로의 전환)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긴급구조 및 긴급복구 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해 수습·복구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수습·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긴급대응 수행 결과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5조(통합지원본부 철수)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와 긴급복구가 완료되어 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제9조에 따른 현장책임관에게 통합지원본부장의 권한을 위임하고 통합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

제26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을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제12조에 따른 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
2. 제14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지원
3. 제16조에 따른 현장응급의료소 지원 협조
4. 제19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
5. 제23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확보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14. 삭제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를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군산시”를 “조례는 군산시”로, “관한”을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긴급구조와 긴급복구”를 “긴급구조”로 한다.

제3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제6조 중 “직원”을 “지원 협력”으로 한다.

제7조제3항제7호 중 “경보발령,피난권고,대피명령,시설복구,수방,방역,구난,피난처”를 “수방,방역,구난,피난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표 1의”을 “별표 1 및 별표 2의 편제와 주요”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별표 2”를 “영 별표1의3”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통합지원본부의 장이 판단하여 현장대응반장을”을 “군산시 재난관리 총괄부서의 장(안전총괄과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판단하여 실정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운영한다.

제11조제1항 중 “경보를 발령”을 “경보 발령을 대책본부장에게 요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통합지원본부장”을 “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통합지원본부장”을 “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16조 제목 “(긴급구조대응 활동의 의료 지원)”을 “(현장응급의료소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응급처치 및 지정병원 이송”을 “이송”으로, “활동 상황과 재난현장에 동원된 자원봉사 단체의 인력에 대한 상황”을 “활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통합지원본부장”을 “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원봉사센터」를”을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로, “재난관리책임기관의”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원봉사센터”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 한다.

제3장제5절(제21조 및 제22조)을 삭제한다.

제23조 앞에 “제4장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을 삽입한다.

제23조 제목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를 “(재난현장 통신망 확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합지원본부장”을 “대책본부장”으로, “법 제37조제1항6호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을 “법 제37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긴급구조통제단장”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24조 앞에 “제4장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을 삭제한다.

제26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6조에 따른 현장응급의료소 지원 협조

제26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호 중 “제18조”를 “제19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2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호 중 “복구”를 “확보”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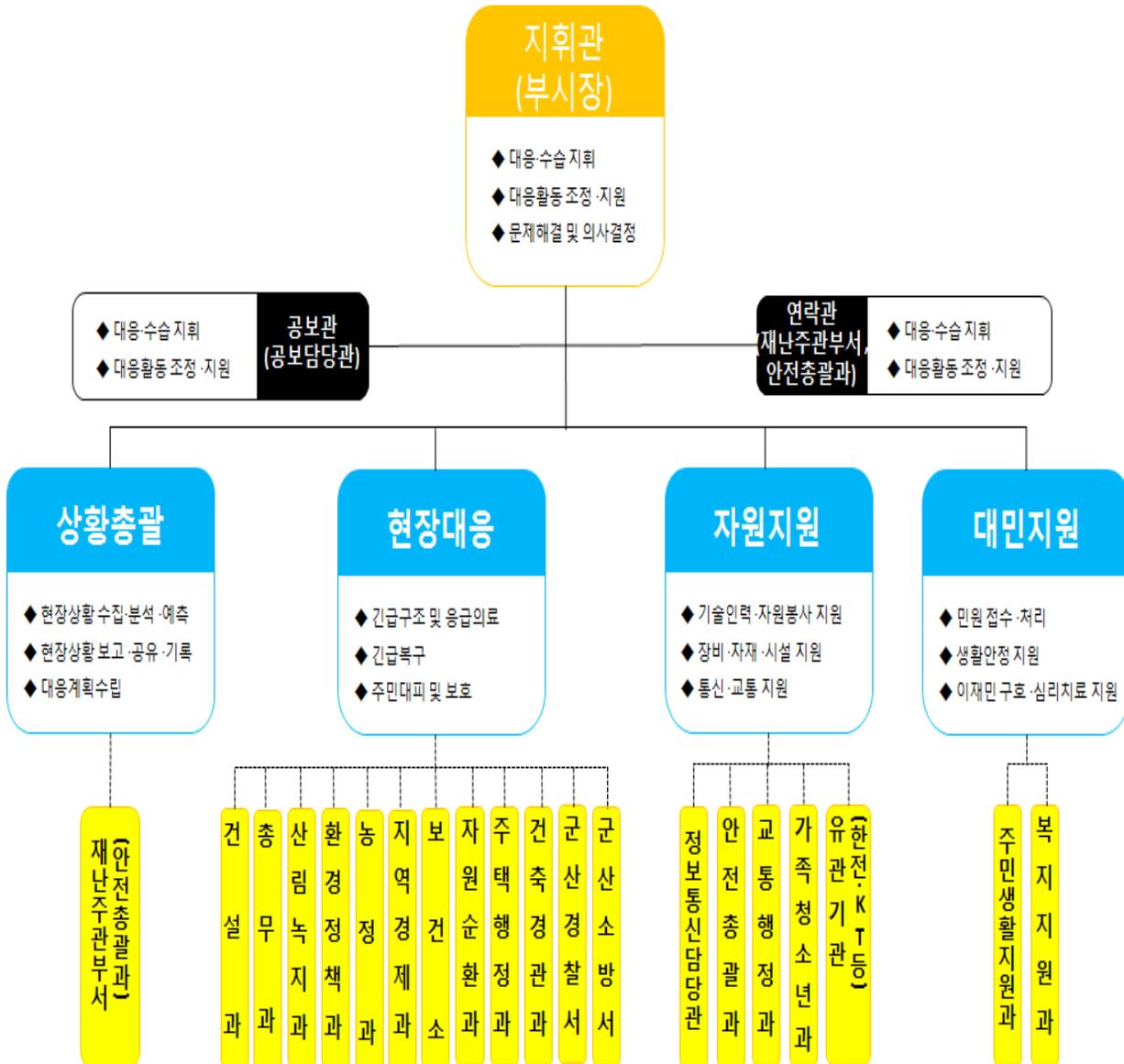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편제 (제7조 관련)

□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편제



[별표 2]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주요임무 (제7조 관련)

구 분	주 요 임 무	담 당
통합지원본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대응·수습 총괄 •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물자·인력 등을 지원 • 구조활동 완료 후 사고현장의 수습·복구 활동자원의 역할분담 및 대응활동 조정 	부 시 장
공 보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미디어 홍보 • 공공정보 모니터링 • 대응단체 정보공유 	공 보 담 당 관
연 락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간 협업 • 민간단체·협회간 협업 	안 전 총 괄 과 (재난수습주관부서)
상 황 총 괄 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지원본부 운영 • 현장 상황정보 수집·분석·예측 • 현장 상황정보 보고·공유·기록 • 재난 및 사고현장 대응계획수립 •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현장 대응·수습상황보고 	안 전 총 괄 과 (재난수습주관부서)
현 장 대 응 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응급복구 • 에너지 복구 • 의료·방역(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지원) • 환경정비 • 사회질서유지 및 수색·구조 지원 	건 설 과 지 역 경 제 과 보 건 소 자 원 순 환 과 군 산 소 방 서 군 산 경 찰 서
자 원 지 원 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통신지원 • 현장대응 자원지원 • 교통대책 • 자원봉사지원 • 인력·장비·자재 등 자원지원 	정 보 통 신 담 당 관 안 전 총 괄 과 교 통 행 정 과 가 족 청 소 년 과 총 무 과
대 민 지 원 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민원접수 및 처리 • 생활안정지원, 이재민구호·심리지원 • 장례지원 등 	주 민 생 활 지 원 과 복 지 지 원 과

통합지원본부 실무반 주요임무 (제7조 관련)

실무반	주요임무	
본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본부 운영 총괄·조정 ○ 현장본부 요원 동원 및 복무 ○ 현장상황 의사결정 등 	
상황총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상황수집·보고(지대본 상황관리반 등)·전파 ○ 주요인사 방문객 상황브리핑 ○ 민원접수·처리 등 현장민원실 운영 ○ 예산 확보 및 집행 	
의료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응급의료소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 ○ 병원별 근무자 배치, 부상자 현황관리 ○ 의료비 지급보증 및 의료비 지원 ○ 피해자 심리지원 ○ 지대본 생활안정지원반에 상황보고 	
장례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자 인적사항 파악 ○ 장례식장 전담인력 배치 ○ 유가족 1:1전담 지원 업무 ○ (필요시) 분향소 설치 운영 ○ 지대본 생활안정지원반에 상황보고 	
이재민 구호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재민 발생 현황파악 및 보고 ○ 임시주거시설 지원 ○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지원 ○ 이재민 대피소 근무자 배치 ○ 피해자 생계지원 등 ○ 지대본 생활안정지원반에 상황보고 	
행정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한 인력·장비·자재 등 자원동원 ○ 자원봉사자 현장 배치 등 지원 총괄 ○ 본부 운영에 필요한 사무기기 등 장비 지원 ○ 지대본 자원지원반에 상황보고 	
언론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수습 상황 언론 브리핑 ○ 언론사 현장취재 지원, 오보대응 등 ○ 지대본 홍보반에 상황보고 	
유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 경, 소방, 유관기관 동원 ○ 전기·가스·통신 등 시설복구 ○ 기타 유관기관의 소관시설·업무 수행 	
유형별 대응반	산불진화	○ 진화대 동원, 산불진화
	건물안전진단	○ 화재 및 붕괴 등 피해건물 안전진단, 긴급조치
	제설지원	○ 구조장비, 제설장비 지원(예: 건물 붕괴 사고)
	오염처리	○ 현장 오염 잔재물 처리(예: 불산 누출 사고)
	농·축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피해농가 조사(예: 불산 누출 사고) ○ 농작물 정밀조사(예: 불산 누출 사고)

소관 부서장
부시장 (필요시 시장)
안전총괄과장 (재난수습 주관 부서장)
보건소장
복지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총무과장 가족청소년과장
공보담당관
군산경찰서, 군산소방 서, 육군 제9585부 대, 한전, 군산도시 가스, 한국전기안전 공사, KT군산지사
산림녹지과장
주택행정과장 건축경관과장
건설과장
환경정책과장 자원순환과장
농정과장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u> <u>설치 · 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이 <u>조례는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u> <u>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 현장의 총괄 · 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 · 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 본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u> 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2. (생략)</p> <p>3. "재난현장 수습 · 복구"란 재난현장의 <u>긴급구조와 긴급복구</u>가 완료되고 통합지원본부장의 통제 하에 사고현장의 수습, 자원지원, 환경정비, 의료지원, 시설복구, 자원봉사단체관리 등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p> <p>4. ~ 7. (생략)</p> <p>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 · 수습할 수 있</p>	<p style="text-align: center;"><u>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 <u>조례는 군산시</u> ----- ----- ----- ----- ----- <u>관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서 위</u> 임된 <u>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u> --.</p> <p>제2조(정의) ----- ----- ----- 1. · 2. (현행과 같음) 3. ----- <u>긴급구조</u>----- ----- ----- ----- -----.</p> <p>4. ~ 7. (현행과 같음)</p> <p>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 ----- ----- -----</p>

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통합 대응을 할 수 있다.

1. ~ 3. (생략)

4. 긴급복구 : 재난현장에 인력 및 장비 등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응급복구하는 단계

5. (생략)

제6조(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서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직원이 용이하고, 긴급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 편성 및 임무) ①·② (생략)

③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 6. (생략)

7. 그 밖에 경보발령, 피난권고, 대피 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보급,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사회질서유지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④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

-----.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4. (현행 제5호와 같음)

제6조(통합지원본부의 위치) -----

----- 지원 협력 -----

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 편성 및 임

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 ~ 6. (현행과 같음)

7. -----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④ -----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에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반, 현장대응반, 자원지원반, 대민지원반 등 실무반을 둘 수 있으며, 구성된 실무반은 별표 1의 임무를 수행한다.

⑤ 통합지원본부장은 제4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시 별표 2의 재난 유형과 사고 규모를 판단하여 실무반장과 현장대응요원을 사전에 지정하고 24시간 가동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⑥ (생략)

제9조(사고수습 총괄부서의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 지정)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생략)

2. 영 별표1의3의 재난유형별 사고발생시 사고대응 중앙 주관부처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없을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이 판단하여 현장대응반장을 임명한다. <후단 신설>

3. (생략)

----- 별표 1 및 별표 2의 편제와 주요 -----.

⑤ -----
----- 영 별표1의3 -----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사고수습 총괄부서의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 군산시 재난관리 총괄부서의 장(안전총괄과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판단하여 실정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운영한다.

3. (현행과 같음)

의 인력에 대한 상황을 통합지원본부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에 현장응
급의료소가 정상가동 될 때까지 통합
지원본부 현장대응반에 소속한 의료
인력과 자원을 긴급구조 대응 활동에
우선 지원한다

③·④ (생략)

제18조(재난현장 통합대응) 통합지원
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재난관리책
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효과
적으로 총괄·조정 및 지원하여야 한
다.

제20조(자원봉사활동의 지원) ① 통합
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
본부의 자원지원반에 소속한 「자원
봉사센터」를 설치·운영 하여야 하
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동원된 인력
에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 3. (생략)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자원봉사센터
에서 부족한 자원 지원요청이 있을시
법 제39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에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생략)

제5절 재난현장 긴급복구

-----.

② 대책본부장-----

③·④ (현행과 같음)

<삭제>

제20조(자원봉사활동의 지원) ① ----

----- 「통합자원봉사지원
단」을 -----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은 -----

1. ~ 3. (현행과 같음)

② ----- 통합자원봉사지원
단-----

③ (현행과 같음)

<삭제>

제21조(재난현장 긴급복구) 통합지원
 본부장은 긴급구조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
 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
 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
 다.

제22조(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
청) ① 대책본부장은 긴급복구를 위
 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 재난
 관리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
 다.
 ② 제1항의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
 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23조(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① 통합
 지원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
 해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못
 하는 경우 법 제37조제1항6호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에게 현장지휘통신
 긴급복구 등을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긴급구조
 통제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에 기술인력 파견등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

제26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삭 제>

<삭 제>

제4장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

제23조(재난현장 통신망 확보) ① 대책
 본부장-----
 ----- 법
제37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

② ----- 재난관리책임
기관의 장-----

 -.

<삭 제>

제26조(권한의 위임) -----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을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위임한다.

- 1. 제7조제3항, 제4항, 제5항에 따른 실무팀의 편성 및 임무
- 2. 제8조에 따른 업무연락관 파견
- 3. 제9조에 따른 사고수습 총괄부서의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 지정
- 4. 제11조에 따른 재난지역 주민대피
- 5. 6. (생략)
- 7. 제15조에 따른 긴급구조 지원
- 8. 제18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
- 9. 제19조에 따른 응급의료 활동 지원
- 10. 제20조에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
- 11. 제22조에 따른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
- 12. 제23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 13. 제24조에 따른 수습·복구체계의로의 전환
- 14. 제25조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철수

-----.

<삭 제>

<삭 제>

3. 제16조에 따른 현장응급의료소 지원 협조

<삭 제>

1. 2.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삭 제>

4. 제19조-----

<삭 제>

<삭 제>

<삭 제>

5. ----- 확보

<삭 제>

<삭 제>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 공고 제2018-1947호.

「군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군산시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가. 주민자치위원 구성 시 관내 읍·면·동과의 중복 위축을 피하고자 함.
- 나. 주민자치위원의 주민자치위원회 참여 유도를 위함.
- 다. 실비보상 지급 시 지급 가능 범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주민자치위원 구성 관련 단서 삽입(안 제17조)
- 나. 주민자치위원 해촉 관련 제6호 신설(안 제20조)
- 다. 실비 지급 대상 관련 대상 명확화(안 제23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1월 5일까지 군산시장(참조 : 인재양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yunga91@korea.kr

2)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인재양성과

3) 팩스 : 063-454-257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인재양성과 평생교육계(전화 : 063-454-260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군산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2.“단체”란 관할구역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등의 주민 조직을 말한다.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읍·면·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2장 주민자치센터

제4조(설치등) 자치센터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청사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의 관할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자치센터의 명칭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5조(기능) ①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제1항의 기능중 당해 읍·면·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필요한 시설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정하되, 읍·면·동별 특성, 재정형편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읍·면·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읍·면·동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밖에 재정형편상 시설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①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한다.

②읍·면·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에 따라 "수강료 등" 징수액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시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 등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에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⑦시장과 읍·면·동장은 관할 구역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⑧시장과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프로그램 발표회(경연대회) 및 작품전시회 등 자치센터 운영 평가를 통해 자치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 ①시장과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강사) ①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수강료등) ①자치센터의 운동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운동시설 사용료와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료(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강료등은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③수강료등은 별표1의 제2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징수하되,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

④수강료등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시장과 읍·면·동장은 자치센터 이용자가 별표1의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수강료등을 감면해야 한다.

⑥제2항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등은 위원회가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위원회는 수강료등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수강료등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⑧납부한 수강료등의 환불 기준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이용등) ①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자치센터 이용자는 제10조 규정에 따라 자치센터 운동시설 및 프로그램의 이용에 대하여 수강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④읍·면·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주민참여) ①시장과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관할 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①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①읍·면·동장은 매년 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읍·면·동장은 제10조에 의한 수강료등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자치센터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제15조(설치) 읍·면·동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제16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

③위원회는 제21조에 의한 정기회의 개최시 제5조제1항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구성등) ①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5명 이내의 위촉직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고, 시의회 의원은 해당 선거구에 속한 읍·면·동 위원회의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또한 시의회 비례대표의원은 주민등록을 둔 읍·면·동 위원회의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단, 위촉은 1개의 읍·면·동의 위원회에 한한다.

②읍·면·동장은 해당 읍·면·동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된 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해당 읍·면·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리장 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자

③ 읍·면·동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 각층, 각 지역에서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여야 하며,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1/3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⑤위촉직고문은 읍·면·동장이 위촉하되, 해당 읍·면·동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⑥읍·면·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고문은 시의회 의원의 임기에 한 한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④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⑤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9조(간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읍·면·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해촉) ①읍·면·동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부터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해당 읍·면·동의 관할 구역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위원으로서 회의에 연속 3회 불참하거나 또는 년 6회 회의를 불참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1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⑤읍·면·동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실비보상등)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고문을 제외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군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u></p> <p>제17조(구성등) ① (생략)</p> <p>② 읍·면·동장은 해당 읍·면·동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된 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p> <p>1. 해당 읍·면·동에 소재하는 <u>각급 학교, 통·리장 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 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u></p> <p>2. <u>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자</u></p> <p>③ ~ ⑦ (생략)</p> <p>제20조(해촉) ① 읍·면·동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p> <p>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부터 제5호의 경우에는</p>	<p><u>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u></p> <p>제17조(구성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읍·면·동장은 해당 읍·면·동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된 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단, 위촉은 1개의 읍·면·동의 위원회에 한한다.</p> <p>1. 해당 읍·면·동에 소재하는 <u>각급 학교, 통·리장 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 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u></p> <p>2. <u>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자</u></p> <p>③ ~ ⑦ (현행과 같음)</p> <p>제20조(해촉) ① ----- ----- ----- ----- -----</p>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 설>

② (생 략)

제23조(실비보상등)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
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6. 위원으로서 회의에 연속 3회 불
참하거나 또는 년 6회 회의를 불
참하는 경우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실비보상등) -----
-----.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고문을 제
외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
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산시 공고 제2018-1948호.

「군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가. 상위법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주민자치회의 기능 정비
- 나. 주민자치회 위원의 회의 참여 유도를 위한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 단서 신설

2. 주요내용

- 가. 주민자치회의 기능 관련 정비(안 제5조)
- 나. 주민자치위원 해촉 관련 제6호 신설(안 제20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1월 5일까지 군산시장(참조 : 인재양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yunga91@korea.kr

2)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인재양성과

3) 팩스 : 063-454-257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인재양성과 평생교육계(전화 : 063-454-260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군산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법 제29조에 따른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면·동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면·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면·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시장은 관할지역의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 읍·면·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③ 시장은 관할지역 내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는 주민자치회가 요청하는 경우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도서 및 벽지 지역
2. 기타 지리적으로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의 업무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는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추천 또는 공개모집한 날 현재 만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와 시의회 의원 및 위원선정위원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2. 해당 읍·면·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3. 해당 읍·면·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기관·단체의 장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2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권한)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의 행정기능에 속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협의 권한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읍면동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읍면동 기능에 대한 협의 권한
2. 수탁 권한 :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처리 권한
3. 주민자치회 관련 권한 :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주민자치회 유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권한

제9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출한다.

1. 주민대표위원 : 공개모집 후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자
2. 직능대표위원 : 당해 읍·면·동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 중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자
3. 지역대표위원 : 읍·면·동별 이·통장협의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② 위원선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위원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대표위원 후보자 중 5명 이하를 순위를 정하여 예비후보로 선정한다.

③ 제2항의 위원 후보자 명부는 위원선정위원회 구성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 후보자 명부 중에서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⑤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주민대표위원 및 직능대표위원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후보 중 선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위촉한다.

2. 지역대표위원은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선정한다.

⑥ 시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즉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위원선정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출을 위하여 읍·면·동에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읍·면·동장 추천위원 3명

2. 읍·면·동 직능단체, 유관기관 추천위원 3명

3. 읍·면·동별 이·통장협의회 추천위원 3명

③ 선정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추천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호선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의 선정방법과 제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표위원별 정수 결정

2.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기준 설정 및 선정·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⑤ 선정위원회는 성·연령·소득수준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 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100분의 4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선정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주민자치회의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11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2조(간사)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와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감사) 주민자치회에 감사 3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5조(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읍·면·동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읍·면·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장 주민자치회의 위원

제16조(위원의 의무)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7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치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주민자치회의 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주민자치회의 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해당 읍·면·동의 관할 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해당 학교장·기관장·단체장의 직위에서 물러나게 된 경우
 3. 제7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특별법 제29조 제2항 및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한 경우
 5.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으로서 회의에 연속 3회 불참하거나 또는 년 6회 회의를 불참하는 경우
-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의 제4호 또는 제5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위원의 해촉을 자치회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③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장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제21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읍·면·동장 및 자치회장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2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3조(감독)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4조(운영세칙) 기타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법 제29조에 따른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 ----- ----- ----- ----- -----.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			
1.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 처리	2.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의 주민자치 업무	3.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의 업무			
제20조(주민자치회의 위원의 해촉)	제20조(주민자치회의 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① ----- -----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 5. (생략)

<신설>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위원으로서 회의에 연속 3회 불참하거나 또는 년 6회 회의를 불참하는 경우

군산시 수도사업소 공고 제2018-5호

군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개정에 따른 사항

나. 자발적으로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시설물규모 완화규정을 신설하여 하여 향후 개방화장실 신청 시,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방화장실의 지정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③항)

- 1)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이란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로서 제3조제2항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해당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안 제12조제③항)신설

3. 의견제출

군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10월 25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 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하수과(전화 : 454-5483, FAX : 063-454-5449)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1) 의견제출 기한 : 2018년 10월 16일 ~ 10월 25일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하수과 오수관리계

전화 063-454-548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군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참고

군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③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이란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로서 제3조제2항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해당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② (생략) <u><신설></u>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② (현행과 같음) <u>③법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이란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로서 제3조제2항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해당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u>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 고시 제2018-123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하였기에 같은 법 제8조 제6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군 산 시 장

■ 고시사항

- ① 허가연월일 : 군산시 승인 2018-0004호 (2018. 10. 10.)
- ② 허가를 받은자
 - 주소 : 전북 군산시 시청로17 (조촌동, 군산시청)
 - 성명 : 군산시장(관광진흥과)
- ③ 허가목적 : 장자도 푸드존 운영
- ④ 허가장소 : 군산시 옥도면 장자도리 산2-5번지 및 17번지 인근 공유수면
- ⑤ 면 적 : 225m²
- ⑥ 허가기간 : 2018. 10. 10. ~ 2020. 10. 09.까지

군산시 공고 제2018-1844호

군산 도시계획시설(중로2-65)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

군산시 조촌동 2-26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2-65호선)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이 작성·제출되어 실시계획인가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5일

군 산 시 장

1. 열람 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2. 열람 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3. 사업의 개요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조촌동 2-26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65호선)사업

2) 명 칭 : 양촌1길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폭 : 17~20m, 길이 : 580m, 면적 : 9,663㎡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사업시행자 주소

- 페이퍼코리아(주) : 전라북도 군산시 외항로 1245(비응도동)

- (주)디오션시티쓰리 :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 50(조촌동)

2) 사업시행자 성명 : 페이퍼코리아(주), (주)디오션시티쓰리 대표이사 권육상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0. 4. 30.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 붙임참고

4. 열람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063-454-35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	토 지 소 제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1	구암동	274-13	장	560	560	코리아신탱(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	-	-	-
2	구암동	276-24	대	6	6	코리아신탱(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	-	-	-
3	조촌동	2-26	장	26,551	1,047	코리아신탱(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	-	-	-
4	조촌동	55-1	구	40	40	코리아신탱(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	-	-	-
5	조촌동	50-1	구	137	136	군산시	-	-	-	-	-
6	조촌동	61	구	284	270	북선제지화학공업주식회사	함경북도 길주군 길주읍 영기동 435	-	-	-	-
7	조촌동	61-2	구	76	7	북선제지화학공업주식회사	함경북도 길주군 길주읍 영기동 435	-	-	-	-
8	조촌동	57	구	244	203	유신복	군산시 조촌동 66	-	-	-	-
9	조촌동	704-3	도	716	31	국(국토교통부)	-	-	-	-	-
10	조촌동	36-3	구	1,155	1,155	군산시	-	-	-	-	-
11	조촌동	704	도	584	49	국(국토교통부)	-	-	-	-	-
12	조촌동	7-5	구	1,726	1,726	군산시	-	-	-	-	-
13	조촌동	25-2	구	93	93	군산시	-	-	-	-	-
14	조촌동	8-2	구	1,627	154	농어촌공사	-	-	-	-	-
15	조촌동	9-1	답	119	119	군산시	-	-	-	-	-
16	조촌동	10-5	구	635	635	군산시	-	-	-	-	-
17	구암동	602-2	도	29	25	국(국토교통부)	-	-	-	-	-
18	구암동	272-12	구	2,728	1,530	군산시	-	-	-	-	-
19	구암동	276-7	장	694	18	박종인	군산시 구암로 78	(주)전북은행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69-2	근저당	-
20	구암동	275-7	도	691	426	군산시	-	-	-	-	-
21	구암동	278-6	도	73	51	군산시	-	-	-	-	-
22	조촌동	10-6	도	321	234	군산시	-	-	-	-	-
23	조촌동	8-10	도	40	40	채규상	옥구군 개정면 구암리 83	-	-	-	-
24	조촌동	8-11	도	53	53	채규상	옥구군 개정면 구암리 83	-	-	-	-
25	조촌동	7-6	도	102	102	유신복	군산시 조촌동 66	-	-	-	-
26	조촌동	25-3	도	53	53	고덕영	군산시 조촌동 32	-	-	-	-
27	조촌동	37-4	도	53	49	북선제지화학공업주식회사	함경북도 길주군 길주읍 영기동 435	-	-	-	-
28	조촌동	37-5	도	7	1	고덕영	군산시 조촌동 32	-	-	-	-
29	조촌동	36-6	도	225	225	북선제지화학공업주식회사	함경북도 길주군 길주읍 영기동 435	-	-	-	-
30	조촌동	58	전	334	43	문부철	군산시 신영동 65	-	-	-	-
31	조촌동	36-8	도	463	247	군산시	-	-	-	-	-
32	조촌동	7-7	도	1,031	307	군산시	-	-	-	-	-
33	조촌동	37-1	답	60	28	군산시	-	-	-	-	-
합 계				41,510	9,663						

군산시 공고 제2018-1899호

군산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

군산시 조촌동 2-8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제90호)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이 작성·제출되어 실시계획인가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12일

군 산 시 장

1. 열람 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2. 열람 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3. 사업의 개요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조촌동 2-82번지 일원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 2) 명 칭 : 페이퍼코리아 주차장(90호) 조성공사
 -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주차장 조성 1,763m²
 -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1) 사업시행자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 50(조촌동)
 - 2) 사업시행자 성명 : 페이퍼코리아(주) 대표이사 권육상
 -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8. 11. 30.
 -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참고
4. 열람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063-454-35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	동	지번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1	군산	조촌동	2-82	장	1,471	1,471	군산시	-	-	-	
2	군산	조촌동	439-22	구	249	249	군산시	-	-	-	
3	군산	조촌동	479-25	구	43	43	군산시	-	-	-	
계	3필지				1,763	1,763					